

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(도시철도국) 소관  
제 1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

검 토 보 고

I. 추경예산안 개요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

나. 의안번호 : 제1819호

다. 제출일자 : 2024년 5월 27일

라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0일

마. 추경예산 편성 사유

-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

## 2. 추경예산안 총괄

### □ 세입예산안

- 2024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(도시철도국)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 370억 13백만원 대비 570억 94백만원(2.8%)이 증가한 2조 941억 7백만원으로 편성됨
-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8,872억 1백만원 대비 570억 94백만원(3.0%) 증가한 1조 9,442억 95백만원으로 편성
-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,465억 38백만원으로 예산변동 없음
-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억 74백만원으로 예산변동 없음

### ※ 도시기반시설본부(도시철도국) 세입예산안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	예 산 액			
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 감	증감률(%)
계	2,094,107	2,037,013	57,094	2.8
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	1,944,295	1,887,201	57,094	3.0
교통사업특별회계	146,538	146,538	0	0.0
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	3,274	3,274	0	0.0

□ **세출예산안**

- 2024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(도시철도국)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2,747억 61백만원 대비 965억 47백만원(7.6%)이 증가한 1조 3,713억 8백만원이 편성됨
  -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,961억 46백만원 대비 959억 96백만원 (48.9%)이 증가한 2,921억 42백만원으로 편성
  -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,843억 32백만원 대비 5억 52백만원(0.1%)이 증가한 8,848억 84백만원으로 편성
  -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,492억 76백만원으로 예산변동 없음
  -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0억 6백만원으로 예산변동 없음

※ **도시기반시설본부(도시철도국) 세출예산안**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	예 산 액			
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 감	증감률(%)
계	1,371,308	1,274,761	96,547	7.6
일 반 회 계	292,142	196,146	95,996	48.9
특 별 회 계	1,079,166	1,078,614	552	0
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	884,884	884,332	552	0.1
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	149,276	149,276	0	0
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	45,006	45,006	0	0

## Ⅱ. 회계별 세입 · 세출예산안

### 1. 일반회계

가. 세입예산안 : 별도 계상내역 없음

나. 세출예산안

- 기정예산 1,961억 46백만원 대비 959억 96백만원(48.9%)이 증가한 2,921억 4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

〈 증액 내역 〉 1건, 959억 96백만원

-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전출금 959억 96백만원

#### ※ 일반회계 세출예산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추경예산액 (A)	기정예산액 (B)	비교증감 (A-B)	증감률 (%)
총 계	292,142	196,146	95,996	48.9
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전출금	292,142	196,146	95,996	48.9

### 2.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

가. 세입예산안

- 기정예산 1조 8,872억 1백만원 대비 570억 94백만원(3.0%)이 증가한 1조 9,442억 9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

〈 증액 내역 〉 2건, 1,326억 94백만원

- 순세계잉여금 366억 98백만원
- 기타회계전입금 959억 96백만원

〈 감액 내역 〉 1건, 756억원

- 예수금수입 756억원

※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추경예산액 (A)	기정예산액 (B)	비교증감 (A-B)	증감률 (%)
총 계	1,944,295	1,887,201	57,094	3.0
순 세계 잉 여 금	36,698	-	36,698	100
기 타 회 계 전 입 금	292,142	196,146	95,996	48.9
예 수 금 수 입	457,900	533,500	△75,600	△14.2

나. 세출예산안

□ 기정예산 8,843억 32백만원 대비 5억 52백만원(0.1%)이 증가한 8,848억 84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

〈 증액 내역 〉 1건, 5억 52백만원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상환 5억 52백만원

※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추경예산액 (A)	기정예산액 (B)	비교증감 (A-B)	증감률 (%)
총 계	884,884	884,332	552	0.1
통합재정안정화기 이 자 상 환	1,161	610	552	90.4

### 3. 교통사업특별회계

가. 세입예산안 : 별도 계상내역 없음

나. 세출예산안 : 별도 계상내역 없음

### 4.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

가. 세입예산안 : 별도 계상내역 없음

나. 세출예산안 : 별도 계상내역 없음

### Ⅲ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# 1. 총괄

- 이번 도시기반시설본부(도시철도국)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

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2조 370억 13백만원 대비 570억 94백만원(2.8%)이 증가한 2조 941억 7백만원이며

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2,747억 61백만원 대비 965억 47백만원(7.6%)이 증가한 1조 3,713억 8백만원임

#### 2. 회계별 검토의견

##### < 일반회계 >

-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변동이 없음
-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,961억 46백만원 대비 959억 96백만원(48.9%)이 증가한 2,921억 42백만원이며,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
  -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전출금 959억 96백만원임

##### <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>

-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8,872억 1백만원 대비 570억 94백만원(3.0%)이 증가한

1조 9,442억 95백만원이며,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

- 기타회계전입금 959억 96백만원, 순세계잉여금 366억 98백만원이 증액되고, 예수금 수입 756억원이 감액됨
-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8,843억 32백만원 대비 5억 52백만원(0.1%)이 증가한 8,848억 84백만원이고,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
  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상환 5억 52백만원임

#### **< 교통사업특별회계 >**

-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변동이 없음

#### **<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>**

-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변동이 없음



### 3.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

#### 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(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p.377)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은 '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예탁한 자금 5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6억 10백만원에서 5억 52백만원을 증액(90.5%)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※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 추경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추경안	기정예산	증 감	증감율(%)
예수금 이자상환	1,162	610	552	90.5

- '23년 도시철도 매출공채 판매가 부진<sup>1)</sup>하여 세입액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치유하고자 '23년 12월 26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자금 500억원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예탁(수)하는 약정<sup>2)</sup>을 체결한 바 있음

약정조건으로 예탁금 이율은 1.1%로 하며, 예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0년으로 하되,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5년으로

1)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p16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 목별조서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세입예산	징수결정액	실제수납액	부족액
매출공채	716,252	690,691	690,691	25,561

2)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(수) 약정서

균등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정함에 따라 동 추경안은 '24년도 이자 지급을 위한 예산 5억 52백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

- 매년 도시철도 매출공채 판매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세수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활용과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출하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되나 세입부족 255억 61백만원보다 더 많은 자금을 예탁하여 불필요하게 이자를 상환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
- 한편 「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(수) 약정서」 제4조제2항<sup>3)</sup>에서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계산토록 하고 있고, 금융감독원 여신거래기본약관 변경권고<sup>4)</sup>에서 윤년에는 1년을 366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도록 계산방법 변경을 권고하고 있어 상환이자금액이 다소 과대계상<sup>5)</sup>된 것으로 보임

3)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(수) 약정서 제4조(이자계산)

②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. 단, 예탁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.

4) 금감원, 소비자의 시각에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변경권고(금융감독원 보도자료, 2013. 3. 13.)

< 윤년의 대출이자 계산방법 변경 >

○ (현행) 이자는 평년 또는 윤년에 불구하고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(연체이자와 예금이자의 계산방법도 동일)

\* 1년이 366일인 윤년에도 대출이자가 [대출원금 x (약정이율 % / 365) x 366일]

○ (개선) 대출이자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윤년에는 1년을 366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도록 계산방법 변경 권고

\* 윤년에는 대출이자를 [대출원금 x (약정이율 % / 366) x 366일]로 산정

< 약관개선 권고 이유 >

- 윤년에도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대출이자를 계산하는 현행 방식은 평년과 윤년의 이자금액이 달라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 유발
- 윤년에는 1년을 366일로 적용한 국내 법령 사례(부가세법시행령 §49의2 등)를 감안하여 윤년의 대출이자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

5) 추경안 :  $500\text{억원} \times 1.1\% / 365 \times 366 = 552\text{백만원}$ , 계산방법 변경 :  $500\text{억원} \times 1.1\% / 366 \times 366 = 550\text{백만원}$

■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(2024년  
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p.35, p.377)

-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철도 노후시설 재투자, 민자 철도사업 재정지원 등의 필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

※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 증감내역

회계별	금회추경내역 (단위:백만원)			
	세입 증감액		세출 증감액	
	합 계	61,092	합 계	61,092
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	○ 도시기반시설본부	57,094	○ 도시기반시설본부	552
	- 순세계잉여금	36,698	-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이자 상환	552
	- 일반회계 일반전입금	95,996		
	- 예수금 수입	△75,900		
	○ 도시교통실	3,998	○ 도시교통실	60,540
	- 국고보조금 <sup>6)</sup>	3,998	- 지하철 1~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	20,634
			-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	2,172
			- 지하철 9호선 1 단계 재정지원	361
			-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지원	15,130
			- 신림선 경전철 재정지원	4,172
		- 4·7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	8,030	
		- 9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	9,810	
		- 국고보조금 반환	231	
일반회계			○ 도시기반시설본부 -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	95,996

6) 4·7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2,650백만원, 9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1,348백만원

- 금번 주요 추정 세출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철 1~4호선 노후 시설 재투자 206억 34백만원,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지원 151억 30백만원, 9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98억 10백만원 등 총 610억 92백만원의 세출을 증액 편성하였으며, 세출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959억 9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필요한 세입 재원을 확보하였음
-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'24년도 본 예산 세입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5,335억원, 일반회계 일반전입금으로 1,961억 46백만원을 편성<sup>7)</sup>하였으나

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과도한 사용 우려와 일반회계 재무여건 등을 고려해 당초 편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중 일부인 759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일반전입금을 증액한 바 향후 본 예산 편성 시 세입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불필요한 추경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

아울러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<sup>8)</sup>에 따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를 구분하

7) 2024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p45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추경안	기정예산액	증감
일반회계 일반전입금	292,142	196,146	95,996
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	457,900	533,500	△75,600

8) 지방재정법 제9조(회계의 구분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- 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

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나, '22년 제1회, 제2회 추가경정 예산(안)<sup>9)</sup>, '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(안)<sup>10)</sup> 등 지속적으로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고 있어 반복적인 일반회계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임

---

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9) '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(안) : 일반회계 전입금 1,200억 1백만원을 증액

'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(안) : 일반회계 전입금 2,368억 54백만원을 증액

10) '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(안) : 일반회계 전입금 674억 56백만원을 증액